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9. 25.

기획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

- O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O 발 의 자: 박종길 의원 등 7명(김정희, 황국주, 이진환, 정창근, 고명욱, 강한곤)
- O 발의일자: 2024. 9. 12.(목)
- O 회부일자: 2024. 9. 12.(목)
- 상정 및 의결: 제30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2024. 9. 25.)

2. 제안이유

○ 공공 및 민간이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추진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O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O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4. 참고사항(관계법령 등)

- O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 제48조 및 제51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 O 비용추계서: 비대상
- O 입법예고(2024. 9. 12. ~ 9. 23.)결과: 의견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제정 조례안은 중앙정부・대구광역시 등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대한 추진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우리구 차원에서 사전에 검토하고 체계적으 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 등 지역발 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구의 재정 건전성을 도 모하기 위한 것으로,

O 주요 내용은

- 안 제2조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과 이를 관리하고 추진하는 담당부서의 정의를 규정하고,
- 안 제3조에서는 공모사업의 방향·목표, 전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 등 종합적· 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공모사업의 적법성·타당성·재정협의·사업효과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5조에서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 부서 관련이나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담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우리구 2023년도 구비 1억원 이상 소요 공모사업 현황. 7건

| 구 분 | 디지털 정보과 | 경제 지원과 | 기후 환경과 | 체육 청소년과 | 도시 디자인과 |
|-----|--------------|------------|--------------|------------|------------|
| 건 수 | 2건 | 1건 | 2건 | 1건 | 1건 |
| 재 원 | 국·시·구비 기타 | 시・구비 기타 | 국·시·구비 기타 | 국・구비 | 시・구비 |

- 안 제6조에서는 구가 신청하는 구비 1억원 이상 소요되는 공모사업,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구비 5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공모사업에 대해 사전에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사전보고가 곤란한 경우 관련 예산 편성 이전까지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연 1회 이상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 본 제정 조례안은 한정된 구의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양질의 공모사업 유치를 위하여 신청부터 선정, 추진현황 등 체계적 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여부 등특별한 이견이 없음.
- 6. **질의 · 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 7. 심사결과: 원안가결